

#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남창진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92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8월 11일

발 의 자: 남창진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곽향기, 김영철,  
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  
김종길, 김태수, 김형재,  
김혜영, 남궁역, 민병주,  
박춘선, 서상열, 신복자,  
옥재은, 윤기섭, 윤영희,  
윤종복, 이봉준, 이성배,  
이종태, 이종환, 정준호,  
최민규, 황유정, 황철규  
의원(27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의 적정규모화, 이른바 “적정규모학교 육성”을 추진하고 있으나 남녀공학 전환 학교 지원사업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반영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‘남녀공학으로의 전환’을 추가함.(안 제2조제2호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교육기본법」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운영 등”을 “운영,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“남녀공학으로의 전환”이란 단성(單性) 학교를 남녀공학 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필요할 경우 학교를 통폐합, 이전재배치 하거나 통합운영학교”를 “필요한 경우 통폐합, 이전재배치, 통합운영학교 운영,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적정규모학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적정규모학교 육성”이란 소규모 학교 등 적정규모학교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에 대하여 통폐합(분교장 개편 및 폐지를 포함한다), 이전재배치, 통합운영학교 <u>운영</u> 등을 통해 적정규모학교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3. ~ 7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6조(적정규모학교 운영)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의 육성과 효율적인 학교 지원을 위하여 <u>필요할 경우 학교를 통폐합, 이전재배치 하거나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운영,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등</u>----- -----.</p> <p>3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“<u>남녀공학으로의 전환</u>”이란 <u>단성(單性) 학교를 남녀공학 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 <p>제6조(적정규모학교 운영) ① --- ----- ----- <u>필요한 경우 통폐합, 이전재배치, 통합운영학교 운영,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적정규모학교</u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#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규모학교 육상에 남녀공학 전환 학교 지원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2조(정의)제2호의 내용을 수정(운영 등 → 운영,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등)하고 제8호를 신설하며, 제6조(적정규모학교 운영)의 내용을 추가(남녀공학으로의 전환)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	이 선 희
추계세제팀장	김 중 헌
추계 분석관	김 진 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**